

닭, 오리 및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의2 제2항 관련)

1. 닭, 오리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이 닭·오리를 출하하거나, 닭, 오리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닭·오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케이지(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 상자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닭, 오리의 날개인식표, 발목링, 발목밴드 등의 방법으로 농장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서로 다른 농장의 닭, 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케이지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씨알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씨알에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씨알을 이동할 경우에는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상자 등에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서로 다른 농장의 씨알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난좌, 상자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3. 그 밖에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